

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7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10.15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고, 그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교류하고,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「안산시 창작지원센터」 설치 근거 마련
- 입주 작가의 모집, 이용료 부담 및 행정재산의 위탁 근거 마련

□ 주요내용

1. 안산시 창작지원 센터의 기능(안 제4조)
2. 입주 작가의 모집 및 선정 방법(안 제5조 ~ 제7조)
3. 입주 작가의 이용료 부담(안 제9조)
4. 창작지원 센터의 위탁 등(안 제10조)

□ 제정 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붙임 3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9. 9. ~ 2015. 9. 29. (20일간)

□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: 반영

□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

의견 제출자	의견 내용	검토 의견	비 고
여성기족과	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구성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.	위원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내용 수정 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 (반영)	
감사관	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중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위촉직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기 바람.	‘부위원장은 호선한다’ 내용 추가하여, ‘학계 전문교수’를 ‘문화예술분야 전문교수’로, ‘문화예술계 전문가’를 ‘문화예술분야 평론가’로 수정 (반영)	
	제8조(입주기간) 중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한다.’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 바람.	제8조(입주기간) 중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한다.’를 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’로 수정하여 연장 횟수 및 연장기준 설정(반영)	
	제10조(위탁 등) 중 수탁자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하지 말고, 문화예술진흥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 그대로 문화·예술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 바람.	수탁자를 문화·예술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·개인으로 수정 (반영)	

< 불임 1 >

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5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안산시 창작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관내에 둔다.

제3조(시설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.

1. 창작실
2. 전시실
3. 그 밖의 편의시설

제4조(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
2.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지역주민,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국내·외 예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입주작가) 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.

- ② 입주작자를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문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- ③ 입주작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.
- ④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·외 예술인
 2.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
- 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에 입주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입주작가 선정) 시장은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입주작가를 선정한다.

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-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1. 안산시의회의원
2. 문화·예술 분야 전문교수
3. 문화·예술 분야 평론가
4. 그 밖에 문화·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.

- ⑤ 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공고한 다음 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입주기간)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료 등 부담) ① 센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청소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② 입주작가는 개인 창작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·전화기·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·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, 개인 창작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, 전화료,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.
③ 개인 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가 부담한다.

제10조(위탁 등)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

여야 하며,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잊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,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센터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3.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
4. 센터의 운영실태가 부실할 때
5.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

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, 비품 등을 반환한다. 다만 제10조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손해보험가입) ①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센터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 김 흥 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계장 이 영 분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명 인 (행정 2795)